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3
----------	-----

2024. 4. 30.(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4월 23일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2020년 약 9억 5천만원, 2021년 약 16억 4천만원, 2022년 약 16억 9천만원 ^{2023행감자료}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억제하고 적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노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려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2조)
-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감등의 책무(안 제3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노력 등(안 제4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실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7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공헌 표창(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정 이유

- 식품은 생산, 운송, 소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석탄, 교통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거대 탄소 배출원임
-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전 세계 식품 생산 단계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137억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를

차지. 음식물이 생산부터 폐기까지 주기 전체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 환산량은 36억 톤. 음식물 처리 및 낭비로 인한 삼림 퇴화와 유기 토양 물질 처리 과정에서 8억 톤의 탄소가 배출됨

-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 톤이 감소하며,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같으며,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⁷⁾가 발생함
- 2023년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붙임1 참조} 도내 초·중·고의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은 2020년 3,926톤 약 9억 5천만 원, 2021년 7,451톤 약 16억 4천만 원, 2022년 7,759톤 약 16억 9천만 원으로 발생량과 비용이 매년 증가 하고 있음
-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잔반 없는 빈 그릇 운동, 식단 공모제, 조리실의 1차 가공 음식재료 구입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억제하고 처리비용 절감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타 시·도 조례 검토

- 17개 광역시·도 중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으며, 충북이 최초로 제정하는 것임

7) 출처: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홈페이지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4144/blog-ce-food-waste/>

- 유사 조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0. 11. 제정)가 있음

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학교급식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 과정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에는 제1호는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⁸⁾에 따라 ‘학교급식’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용어 정의, 제3호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그 개념을 명확히 하였음
- 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책무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노력 등)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권고하거나 지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1항에는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제2항에는 실행

8)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 :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함.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도교육청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교육과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실행 방안을 담았음

- 안 제6조(실태조사)부터 제7조(지도·점검)까지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교육감의 지도·점검 횟수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표창)부터 제9조(협력체계 구축)까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에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여, 시책의 안착과 확산요건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특히,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도·점검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입법 체계나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⁹⁾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 업무로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재활용 방안 확대와 자체 세부 실행 방안 마련 등으로 학교 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 보임

9)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1

1. 2023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식생활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현황 >

(단위:교, kg, 천원)

년도	지역	급 별	학교수	발생량			처리비용		
				순수잔반	전처리	소계	순수잔반	전처리	소계
2020	충북	초	260	610,469	1,204,203	1,814,672	141,675	244,473	386,148
		중	112	325,517	475,811	801,328	111,381	102,059	213,440
		고	81	567,034	743,438	1,310,472	190,489	156,093	346,582
계			453	1,503,020	2,423,452	3,926,472	443,545	502,625	946,170
2021	충북	초	259	1,429,306	2,296,206	3,725,512	302,167	462,006	764,173
		중	113	829,527	831,169	1,660,696	199,382	162,031	361,413
		고	81	1,001,651	1,063,392	2,065,043	268,182	243,435	511,617
계			453	3,260,484	4,190,767	7,451,251	769,731	867,472	1,637,203
2022	충북	초	256	1,519,300	2,281,828	3,801,128	317,969	451,012	768,981
		중	113	885,300	795,635	1,680,935	222,956	164,522	387,478
		고	79	1,205,564	1,071,563	2,277,127	307,097	226,440	533,537
계			448	3,610,164	4,149,026	7,759,190	848,022	841,974	1,689,996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기숙사
 -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마. 산업체
 -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 계획서를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 등)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